

장애인 대학생의 정당한 교육권 확보를 위한 자료집

- 장애인 대학생 특례입학제도와
장애인 교육 환경에 대한 연구 -

1997 초판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 목차

1. 들어가며
장애인 특례입학

1. 들어가며...
2. 장애인 특례입학제도와 현황
3. 장애인 특례입학의 현실
4. 특례입학제도의 허와 실
5. 특례입학 실행의 문제점과 대안
6. 나오며

장애인 교육환경

1. 들어가며
2. 교육에 있어서 자유권과 편의시설
3. 외국의 교육환경 (미국의 ADA를 중심으로)
4. 해결방안과 대안
5. 나오며

장애인 특례 입학

1. 들어가며....

모든 인간에게 '교육'이 가지는 의미는 한 사회의 시민 주체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동등한 인격체로서 자립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반이요, 사회적 인정이며 법적, 제도적 틀이다. 그래서 헌법 제9조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권리 실현의 수단으로써 같은 조 2항에는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 학교와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행 교육법상 모든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국가는 모든 국민 개개인을 올바른 사회인으로 교육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국가는 모든 국민이 교육받을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반드시 보장해 주어야 한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과도한 경쟁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장애인 교육은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교과서적인 의미 외에도 교육은 획일적인 평등 단계를 벗어나 교육 결과의 개인간, 계층간의 격차를 줄인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장애인이 일반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교육에 대한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장애인에 있어서 교육은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과 모순을 뚫고 사회 속에서 울퉁한 사회인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그 혜택을 충분히 누리는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방안이다. 교육은 장애인에 있어 사회 통합(Social Integrity)을 이루는데 필수 불가결한 것이며 이와 맞물려 교육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똑같이 적용하는 통합 교육을 반드시 전제로 해야 한다.

그러나, 그 동안의 장애인에 대한 교육은 능력에 따른 교육이라는 기능주의적 시각으로 해석한 교육 방침 아래 교실 안팎에서 장애인의 교육적 권리를 박탈하여 왔다.

우리 나라는 1977년에 특수교육진흥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졌고 1994년에 그 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그 법은 처음부터 헌법 제 31조 제 1항, 제 11조 제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에 정면 위배되는 위헌법이었으며 또 교육법 제 8조 1항 [모든 국민의 의무교육 받을 권리] 와도 대치되는 법안이었다. 이것은 장애아동의 경우 교육법 제98조에서 의무교육 면제 유예조항을 두어 사실상 장애인들은 그 동안

의무교육에서조차 배제되어 온 사실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이 법이 개정될 당시 의무교육 규정이 들어가 지금은 장애인도 의무교육을 받게 되었지만 아직도 교육 수혜율은 실질적으로 10%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 교육의 문제점, 특히 고등교육에 있어 장애인의 교육받을 기회는 오히려 국가가 의도적으로 주지 않는다는 비판이 강력하게 제기되자, 1989년에 대통령 직속 기구인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에서 고등교육 기관에 대한 일정 비율의 장애인의 정원의 입학 허용을 건의했으나 장애인계의 반발로 무산되었고,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장애인 교육 기회 확대 방안 중 하나로 대학진학문제가 거론되다가 94년 1월 24일 교육부가 특수교육 대상자 정원의 특례입학제도 신설 계획을 업무보고 함으로써 본격 논의되어 1995학년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었다.

우리는 이 제도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올바른 장애인의 교육이 과연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따른 물음 속에서 이 제도의 문제를 논리적으로 제기하고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는 이 제도의 찬반 양론을 떠나 바로 이 시점에서 장애인 교육의 정책이 나아가갈 방향을 바로 이 제도를 통해 고민해 보기 위함이다.

2. 장애인 특례입학제도와 현황

장애인 특례입학제도는 1994년 8월5일, 교육부가 교육법 시행령과 대학입학 정원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으로써 그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교육부의 입법 예고 내용은 신체 장애 등급이 1-2등급에 해당하는 중증 장애인은 9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일반 선발방식이 아닌 각 대학 총·학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에 정원으로 특례입학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었다.

교육부는 이 제도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과정상의 특성이나 평가도구 및 평가 방법상의 문제로 대학 진학의 기회가 제한되어 왔던 장애인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그동안 초·중·고 과정에만 한정되었던 장애인들의 교육을 고등교육 과정까지 확장하여 교육받을 권리를 확대·보장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들의 능력 개발과 사회적 재활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기대하며 궁극적으로는 장애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존중하게 됨으로써 장애인 복지 증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었다. 특례입학은 장애인 복지법상의 1-2등급의 중증장애인을 적용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한다는 것이 입법예고 당시 발표한 내용이었으며, 이 제도의 신설을 계기로 능력 있는 장애인들이 대학 교육을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 관련 시설화

총 등 여건 조성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11월에 발표된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전형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특수교육진흥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부장관이 중앙 특수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년도에 전문대학 이상의 각급 학교에 취학할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 청각장애, 시각장애, 지체장애(뇌성마비 포함)가 있는 자가 특별전형에 지원하게 되었다.

95학년도에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경희대, 장로회신학대와 지방대로서는 유일하게 대구대가 장애인 특별 전형을 실시하여 6개 대학에서 120여명의 장애 학생들을 선발하였고, 96년도에는 12개 대학이 확대실시하여 18개 대학에서 1200명의 학생들이 입학하였다.

97학년도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입학 전형 계획을 발표하면서 특례입학으로 장애인을 선발하는 대학별 모집인원과 모집요강도 함께 발표했다. 지금의 이 제도를 실시하는 대학보다 10곳이 늘어 28개 대학에서 장애인 특례입학이 실시된다. 그리고 모집인원은 1천 2백여 명에 달한다.

특례입학을 실시하는 대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국공립 대학이 공주대 창원대 제주대학 등 3개 대학이고, 국립 개방대학은 삼척산업 대학교 1곳, 그리고 사립대학이 제일 많아 23개 대학이다. 이 중에서 기존에 특례입학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을 제외하고 이번에 새로 특례입학을 실시하는 대학은 동국대, 창원대, 중부대, 한동대, 삼척산업대, 동명정보대, 전북산업대, 감리교신학대, 건국대 등이다.

그리고 제일 많은 수의 장애인 입학생을 뽑는 상위 대학은 먼저 건국대는 인원제한을 없애고 수시 모집을 하겠다고 밝혀 제일 많은 수의 장애인 대학생을 선발할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고, 한양대학교 246명, 제주대학교 189명, 대구대학교 183명 순으로 특례입학 장애인을 많이 선발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제일 적은 수의 장애인 입학생을 뽑는 대학은 용인대 2명, 감리교신학대 4명, 장로회신학대 5명 순이다. 이밖의 대학은 대부분 장애인 특례입학 숫자를 10명 내외에서 50명까지로 못하고 있다.

전형에 따르면 장애인 특례입학은 특차 모집과 정시모집, 그리고 수시모집으로 나뉘어 실시된다. 특차 모집은 일반 학생들 전형보다 먼저 장애인 특례입학 대상자를 뽑는 것을 말하는데, 특차모집을 실시하는 대학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등 11개 대학이고 이번 연말인 12월 11일에서 14일 사이에 시험을 거쳐 장애인 대학생을 선발한다.

정시모집은 일반학생들과 동시에 장애인 특례입학대상자를 선발하는 것을 말하는데 공주대, 이화여대 강남대 등 14개 대학이 정시모집을 실시하고 있고, 시험 기간은 12월 26일에서 내년 1월 17일 까지 학교에 따라 일정을 다르게 잡아 선발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수시 모집은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제도이다. 수시모집은 대학입시 모집기간 동안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심사를 거쳐 입학할 수 있는 제도로 건국대, 감리교신학대, 동명정보대학이 이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장애인 특례입학을 실시하는 대학들은 고려대, 연세대, 동국대, 원광대, 한동대, 동

정정보대, 등처럼 수능성적 상위 15% 이내로 선발한다는 규정을 둔 대학도 있지만, 이 대학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들이 종합생활기록부 40% 대학수학능력시험 50% 그리고 면접 10%로 반영하기로 해 상대적으로 종합생활기록부의 비중을 높였다는 특징이 있다. 그 중에서 상명대는 미술학과에 한해 청각장애인 11명을 선발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빠르면 97학년 특례입학 실시부터 선발 방법에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이 변화의 내용은 작년까지 장애인들이 특례입학으로 대학에 들어가려면 특수교육심사위원회에서 먼저 장애 판정을 받아 특례입학 대상자라는 확정을 받은 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는데, 최근 발표된 교육부의 교육 규제완화 과제안 중에서 장애학생 부분을 보면 교육부는 앞으로 장애 학생의 입학 수속을 교육감이나 특수교육심사위원회 등을 거치지 않고 학교장 또는 대학의 총학장에게 장애인수첩 사본 등 필요한 서류만 갖춰서 제출하면 해당 대학 총장이 입학 여부를 결정 본인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관계법을 올해 안에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3. 장애인 특례입학의 현황

교육부가 이 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할 당시 공문 양식을 통해 각 대학에 '장애인 특례 입학'을 실시할 것을 권장 사항으로 공고하였다. 이에 각 대학은 자의적으로 장애인 학생 입시 요강을 만들어 선발하였다.

그러한 대학들의 개별적 입시 요강을 보면 대부분 대학에서 장애인 특례입학대상자를 경중 장애인 또는 다른 사람의 별다른 도움 없이 학업수행과 학교생활이 가능한 학생으로 국한시키고 지원 가능한 학과도 제한을 두었다. 공주대학의 경우, 특수교육과 1개과에서만 특례입학을 허용하고 있으며, 제주대는 전학과 모집이라고 하면서 사범대와 해양과학대, 음악, 체육학과는 제외로 하고 있다.

계다가 같은 지체장애임에도 뇌성마비는 제외해 버렸다. 나사렛신학대학교는 제3자의 도움 없이 학습이 가능한 자만을 선발하고, 부산여대는 성적이 아닌 서류 및 면접심사로 해당 학과 수학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고 하였으며, 성적 전형은 서류심사 및 면접합격자에 한해 실시된다. 상명대는 사범대에 장애인 학생의 입학울 제한하였고 용인대는 '이동능력이 양호'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는 교육의 책임을 학교에게, 학교는 다시 학생 개개인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첫 해 특례입학이 실시된 95년에는 특례입학에서 수석으로 입학한 S대학 J군이 좀 더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Y대에 재응시 하고 K양도 등록을 포기하고 타대학 일반전형에 등록을 마친 일¹⁾이 있었다. 이들은 등록을 앞두고 특례입학에 회의가 생겼으며 졸업 후 특례 입학생

1) 장애인신문 (1995.2.20) 장애학생 특례입학제고 실시 첫 해의 실태
<특례입학 취업에 불이익 줄까 '우려'> 참조

이라는 것이 학업 무능력이라는 낙인이 될까 봐 두려웠음을 고백했다.

이 제도의 이러한 인식적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입학한 학생들도 학기 중에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이다.

미등록의 경우는 면접이나 원서 접수 때 지원 학교에 직접 가본 후 학교를 다닐 엄두가 나지 않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중도에 포기하는 이들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힘들 것을 어느 정도 각오하고 들어왔으나 직접적으로 부딪치는 교육 환경이 도저히 학업을 계속할 수 없도록 하는 상황이라 휴학을 하거나 자퇴를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바퀴차(휠체어) 장애 학생의 경우에 약간의 급경사나 계단에도 목숨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위험하고 위태위태한 학교 생활 하루하루 힘겹게 해 나가고 있다. 사실 많은 바퀴차(휠체어)은 학교 생활에서 크고 작은 낙상(落傷)과 추돌 사고를 당하고 있으며 목발 장애 학생들도 좁은 강의 공간과 학교 공간 속에서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학생들 사이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 내기도 벅거울 뿐 아니라 수업을 받거나 학교생활을 위한 이동 거리도 엄청나게 힘들고 길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96년 초에 장애인 특례입학을 실시하고 있는 전국 18개 대학을 대상으로 교내 편의 시설 실태를 조사한바 있는데, 이들 대학은 장애인들이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편의 시설도 갖추지 않고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으며 그 정도가 심각하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특례입학을 통해 대학에 들어간 장애인 가운데 63%가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특례입학제도의 허와 실

(1) 장애인 교육의 현주소

장애인 특례입학제도는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시켰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이제까지 늘 그랬던 것처럼 이 제도 역시 관료적이며 전시행정일 뿐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잇달고 있는 가운데, 올해로 시행 2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첫째 실시이후 이 제도를 시행하는 대학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대학별로 실시 방법도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과거 입시철만 되면 열병처럼 앓아야 되었던 장애인들의 대학입학 거부 사례들을 고려할 장애인 특례입학제도는 확실히 진일보한 제도로 보여질 수도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 제도에 대한 기본적 발상을 고려하면 그 동안 장애인들이 기초 교육과정에서부터 소외된 현실은 외면한 채 고등교육의 기회만을 부여하는 비현실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정책인 것이다.

이는 마치 장애인들이 사회 통합과 자아실현의 길로 가기위해 초, 중, 고 그리고 대학이라는 문까지 통과해야 한다고 할 때 앞의 네 개의 문은 굳게 닫아 놓은 채 맨 뒤 쪽 한 문만

열어 놓은 격이다.

특례입학을 실시하는 대학들의 장애인 특별 전형 모집요강을 보면 일반전형으로 입학하게 되는 다른 학생들에 비해 커트라인이 낮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장애인 학생들의 학업 능력이 정당하게 평가되어 대학입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초·중·고 과정의 기초 교육에서 장애인의 교육기회 접근권이 원천적으로 분쇄되는 현실에서 단지 '장애'라는 요소가 입학에 하는데 이용되는데서 비롯된 결과이다.

이것은 교육부가 이 제도 속에서 장애인 학생을 교육의 당당한 주체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장애인 학생들의 교육권을 확보해 주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투자가 없고, 대학 당국이 장애인 학생들에 대해 비장애 대학생들을 대할 때와 동등한 교육철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에서 초래된 결과이다. 그것은 이 제도를 실시한 모든 대학에서 특수교육학과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범대에 아직도 장애인 학생의 입학이 불허되고 있다는 사실이 잘 말해주고 있다.

지금까지도 그것은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공주대의 사범대의 신체검사에 의한 합격 불합격 판정기준에는 아직도 '조롱대상자'라고 명시되어 있다.

1995년 현재 전체 취학 연령 장애 아동의 약 15%만이 취학을 했고, 95년도 장애인 실태 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하면 장애인의 학력 정도는 무학(無學)과 국졸이 전체의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장애인의 교육권이 국가의 책임회피와 의무태만으로 인하여 박탈당하고 있음을 여지없이 입증해주고 있다.

<표 2> 재가장애인의 교육정도

(단위 : %,명)

구분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전체
미취학	0.2	-	0.3	4.0	5.1	0.7
안다녔음	28.8	44.3	50.0	18.7	25.4	32.5
국민학교	30.1	26.8	24.6	29.0	26.2	28.8
중학교	15.4	9.7	9.1	17.8	10.9	13.8
고등학교	17.8	12.2	8.7	16.4	5.4	15.2
특수학교	0.4	3.4	4.2	6.0	27.0	3.2
전문·초급대	1.6	0.4	0.2	4.3	-	1.3
대학교 이상	5.6	3.2	2.9	3.8	-	4.7
계	100	100	100	100	100	100
(N)	2,253	237	495	118	225	3,328
전국추정수	695,060	73,104	152,747	36,371	69,447	1,026,729

주) 무응답 7명 제외 < 199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기회의 평등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에 대해 깨끗하게 승복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억압적이다. 고등교육이라 함은 당연히 초·중·고 과정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장애인 교육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은 기준과 그에 따른 동등한 결과를 통해 경쟁해야 한다는 주장은 장애인이 사회적, 물리적 장애로 인하여 교육의 기회의 불평등 및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데 하등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교육환경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는 데 논의될 성질의 것이

다.

요컨대, 초·중·고 과정에서 장애인 교육의 내실화와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 특례입학을 실시하는 것은, 교육부가 고등교육 과정 이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허구적인 정책인 것이다. 그것은 마치 도로를 하나도 정비하지 않은 채 정비공장에서 차만 고쳐서 내놓는 것이 전혀 소용이 없는 결과만을 초래하는 모습인 것이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경쟁이 아닌 '특례'라는 기형적 모습으로 입학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 교육 현실에 대해 교육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러므로 과거 비장애인과 똑같은 절차를 거쳐 대학에 들어가려다 거부되었던 학생들과, 특례입학의 적용대상 학생들의 문제는 다른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장애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없어져야 될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장애인에게 불합리한 기준을 적용한 결과, 간접적·제도적으로 불평등한 차별을 받게 된다.

즉 장애인에게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방법상으로 나타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부당한 사회적 인식과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형식적인 평등은 실질적인 불평등을 만들어낼 뿐이다.

(2) '특차'가 아닌 '특례'제도

특례입학에 대한 또 한가지 평가는 그것이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더욱 심화·확대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당초 이 제도의 도입 취지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과정상의 특성이나 평가 도구 및 평가 방법 상의 문제로 진학기회가 제한되었던 장애인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데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교육부는 기존의 필답고사, 듣기평가 등과 같은 평가방법이 아니라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차이와 장애를 고려하여 장애학생들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현실적인 평가방법 혹은 평가도구를 마련하여, '특혜'가 아닌 특차의 형식으로 정원내 입학울 마련하여야 바람직하다.

여기서 말하는 '특차'는 97학년도 요강에 나오는 선발기간이 차이가 나는 특차가 아니라 선발 방법의 차이를 뜻하는 개념이다.

말하자면, 현행 특례입학은 장애인 학생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방법으로 경쟁하게 될 경우 뒤쳐지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차선책으로 마련하게 된 할당제식의 정책이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지금의 특례입학 제도는 이러한 장애인의 교육소외를 장애인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고 있으며, 그에 따라 성적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에서 받아준 것 같은 인상을 풍기고, 학생들을 기본적으로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낙인찍는 '특례'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외교관 자녀 특례입학제도 같은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이다.

장애인 학생들은 말그대로 '장애'를 감안하여 그 능력을 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평가방법, 곧 '특차'로 선발되어야 하는 대학 교육의 동등한 주체인 것이다.

지금의 이 제도는 장애인 학생에게 입학의 문만 열어 놓았을 뿐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며 졸업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마련되지 않은 현실에서 실행되었다.
이같은 경우에 장애인 대학생이 자신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대학에서의 학업 성취와 경쟁에서 뒤떨어지게 되어 오히려 비장애인들에게 장애인들을 무능력하다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위험이 상당히 높다. 더구나 장애인 시설확충이 전무한 상태에서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는 경우, 이는 장애인의 능력부족으로 곡해될 위험이 있다.

또한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획일적 대학입시교육이 이루어질 위험이 있다. 이는 장애인의 직업재활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과 함께 특수교육의 필요 자체를 무시할 가능성이 있다.

장애인 특례입학을 실시한 대학들이 대부분 사립대학들인 점도 이 정책의 시행에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되는 사실이다. 물론 97학년도에 국공립 대학이 있기는 하지만 이 제도의 학생 모집 방법에 있어 건국대와 같이 무제한으로 학생을 입학시키면서 편의시설을 문제삼아 정립 회관에 장애인 학생끼리 따로 교육시키겠다는 발상은, 대학이 특례입학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장애인 접근시설 확충이나 교육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적절한 대책과 계획을 세우지 않은 채 학생들만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을 나타낸다. 이 제도를 시행한 작금의 대학은 장애인들의 고등교육 기회확대의 명분을 빌어 학교PR과 함께 재정만을 늘리려고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든 것이다. 사실 대학이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법에 따라 편의시설을 하지 않았을 경우 당 학교 총장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물면 그만이고 실제로 특례입학생은 정원의외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뽑을 수 있으므로 그 학생들의 등록금은 굉장한 액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특례입학은 비장애인의 능력평가 방법과 기준을 장애인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적용하여 수치상 낮은 점수를 가지고 정원의외로 특별히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능력을 똑바로 평가할 수 있는 개별적인 평가방법과 기준을 가지고 정원 내로 선발하는 '특차'입학으로 바뀌어야 한다.

5. 특례입학 실행의 문제점과 대안

(1) 권장사항일 뿐인 장애인특례입학제도와 지방대의 시행 외면

* 여러 가지 제도적 한계와 모순점에도 불구하고 이미 장애인 특례입학은 실시되고 있으며 여러 대학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제도 자체의 모순이나 한계보다는 실행 과정상의 문제점 때문에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첫째로 우선 특례입학제도는 교육부의 권장사항일 뿐이라는 점이다.

여태껏 장애인 교육이 국가적 차원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현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대학교육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장애인 대학생이 단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입학거부를 하는 상황에서 과연 이 제도를 권장사항으로 했을 때 이 제도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교육부의 태도는 처음부터 장애인 교육에 있어서 국가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교육은 일개 대학에서 모든 것을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며, 그럴 경우 교육부는 필요없는 정부부서란 말이 된다. 교육부는 장애인 교육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장애인 대학입학 절차의 간소화 방안도 94년도에 개정되었던 특수교육진흥법을 또다시 개정하겠다는 입법 예고 사항을 보면 말 그대로 허구적이다.

교육부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특수교육심사위원회를 없애고 학교 입학은 그 학교의 장의 자율에 맡기겠다고 그 개정방향을 밝혔다.

이것은 학교의 장애인 접근시설 및 지원 프로그램 미비 등 교육 여건을 내세워 중증 장애인을 대학의 자의로 부적합 대상으로 판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장애인을 부당하게 탈락시킬 우려가 있다. 이것은 결국 경증 특수교육대상자만을 선호하여 선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는 특례입학제도로 중증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와는 정반대로, 중증장애인이 그나마 어렵게 받아 온 기초 교육에의 권리마저도 박탈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장애인 교육에 있어 정부가 얼마나 사상누각적인 안목과 탁상공론에만 머물러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로 이와 같은 문제에 따라 국가 정책을 실행하는데 있어 가장 앞장서야 할 국립대학이 특례입학제도의 시행을 대부분 기피하고 있는 것도 특례입학의 문제점이다.

이것은 장애인 교육을 걱정하여 내놓았다는 장애인특례입학제도가 또하나의 걸치레 장애인 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한다. 우리 나라 최고의 대학인 서울대가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라면 어느 대학에서 선뜻 경제적으로 부담을 안고 이 제도를 시행하려 하겠는가?

셋째로 지방대가 이 제도를 외면하고 있는 사실이다.

사회적으로 장애인의 이동과 생활에 대한 보장이 거의 전무한 현실에서 대구대, 창원대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방대가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지방 장애인 학생에게 응시를 포기하게 강요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

장애 관련 정책이 부분적, 일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적용자들 역시 부분적인 혜택을 누리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나머지 부분에서의 불편과 불평등이 상존하는 한은 그 나머지 부분이 온전하게 정책의 방향대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다.

미흡하나마 기초적인 수준이라도 보편적으로, 골고루 적용하며 장기적 안목을 갖고 계획성 있게 추진해야 하는 것이 장애인 정책이며 그 중에서도 교육정책은 특히 그러하다.

교육부는 국·공립대를 중심으로 장애인 특차입학제도를 실행하여 지방대까지 포함한 모든 대학이 보편적으로 합의하여 의무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교육부의 지원과 관리의 부재

교육부는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당초 장애인들이 교육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시설 확충 등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약속하면서 특례입학을 실시하는 대학들에게 시설용자금 등의 방안을 내놓았으나 후에 이를 전면 백지화하였다.

장애학생들의 교육문제를 일선 교육기관인 대학에 일임해 버린 채 뒷짐만 지고 있는 교육부는 교육환경에 관한 시설 역시도 대학당국이 알아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대부분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사립대학에서는 재정적 어려움을 빌미로 편의시설 확충을 피하고 또한 그런 이유로 해서 학생 선발 과정에서 별도의 물리적 편의시설이나 지원 시스템이 필요없는 경증 장애학생만을 받아들여지게 되어 교육부의 제도 도입 취지는 무색해지고 말았다. 이는 편의시설을 이유로 장애인의 입학 불허하는 대학들을 정당화하는 장애인 입학거부의 합법화인 것이다.

이것은 장애인 고용 문제의 경우, 이를 책임지는 노동부가 장애인 의무고용률 2%를 어기는 기업에 대해서 부담금 징수하여 장애인 고용촉진기금을 마련하는 것을 생각하면 교육부의 특례입학제도에 대한 자세는 탄핵을 받아 충분한 것이다.

교육부는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하는 국·공립 대학에 우선적으로 장애인 특례입학의 실시를 의무화하고 함께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대학 종합평가 요소에 바로 이러한 대학의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지원시스템도 중요하게 작용하도록 이와 관련한 항목도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진정한 교육의 목적이 신체 건강할 젊은이들만을 유명한 대기업에 손쉽게 들어가는 학생으로 키워 내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인간을 길러 내는 데에 있고 대학의 경쟁력도 이러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면, 대학교가 장애인을 당당한 교육의 한 주체자로 인정하는 인식의 전환이 반드시 선행되고, 그러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강제성을 지닌 국가적 제도와 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육부는 사립대학의 강제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의 제재 조치와 맞물려서 장애인특차입학을 실시하는 학교의 지원방안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 더 이상 장애인 교육문제에 있어 대학의 자율적 해결만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3) 일률적인 지원학과의 제한

특례입학 실행 과정상의 또 한가지 문제는 그것이 장애인을 거부하는 합법적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례입학을 도입하는 대학들이 실시 배경을 발표하면서 하나같이 표방하는 바는 대학의 교육이념이나 진학이념에 입각하여 소외계층에게 사랑을 전하듯, 장애인에게 대학의 문호를 개방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 당국은 이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장애인 학생들에게 마치

원래 배풀지 않아도 될 그런 배려를 해주고 있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것은 애초부터 대학이 장애인 교육에 대해 동등한 교육철학이나 사상적 기반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들은 장애유형의 특수성이나 장애 정도에 관계하지 않고 이와 관련한 어떠한 전문 지식도 없이 장애인 학생들의 지원학과를 제한하고 있다.

그것은 특례입학제도를 보호막으로 합법적으로 장애인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학생이 지닌 능력이나 수학 여부에 대한 세심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지망 학과를 제한한다는 것은 과거 대학에서 장애를 이유로 학생들의 입학 불허했던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일이고 오히려 더욱 기만적인 일인 것이다.

제주대의 4개학과 제한·뇌성마비 제외, 용인대의 경증장애 표기, 상명대의 사범대 예외조항은 명백한 장애인에 대한 불평등한 차별인 것이다. 부산여대가 서류 및 면접심사의 합격자에 한해 성적전형을 실시하는 것도 학생선발기준이 학업의 성취도가 아닌 장애 정도에 맞추어진 것임을 뜻한다. 장애인이라 해도 처한 상황에 따라 그 능력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장애유형별·정도별로 그 특성이 다를 때, 이러한 문제점은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을 타당하게 한다. 어떤 대학은 특례입학 지원 학생들에게 사전면담을 실시하여 학생의 장애와 지원학과의 특성을 고려해 과를 조정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선발과정에서 경증의 장애학생들을 가려내기 위한 방안으로 악용되고 있다. 면담과정에서 수학 여부를 판정하는 교수들이 전혀 전문가가 아니라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특례입학생의 지원학과를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불평등한 차별이므로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4) 특례입학 실시 대학의 교육환경 미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장애인특례입학실시 대상 대학교 편의시설 실태조사 보고서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의 점자안내도나 점형유도블록은 고사하고 점자도서 하나도 구비해 놓은 학교가 드물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사가 있는 곳도 없어 학사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지체장애인의 경우는 건물의 계단이나 문턱으로 인해 강의실 이동과 도서관 출입이 곤란하고 심지어 식당과 화장실의 이용도 못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이러한 교육환경을 이유로 휴학과 자퇴를 한 장애인 학생들이 결코 적지 않다는 사실은 특례입학이 얼마나 시급하게, 대책 없이 이루어진 제도인지를 가늠하게 한다.

실사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특례입학 학생들의 교육환경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소홀하였음에 대한 대학의 책임은 회피할 수 없다. 재정적 이유만이 학교 당국의 편의시설 미비와 지원 책의 부재는 변명이 되지 못한다.

만약 정부의 지원 책이 있었을 경우 그것을 적재적소에 배치·배분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학교는 몇이나 있는가? 대학은 장애학생의 입학에 대해 어느 정도의 준비를 거쳤는가? 지금의 우리 대학들은 우리 학교는 장애인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훌륭한 학교라는 선전에만 급

같은 모습이다.

지금 이 제도를 채용하여 장애인 학생들을 입학시킨다고 해서 과거 대학들이 대학의 권위와 위신 운운하며 장애인을 입학 거부했던 것에 대해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대학의 모습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학내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있는 학교들 중 '전용'의 원칙을 준수하는 학교가 거의 없다는 사실은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의 무관심과 무책임, 그리고 교육철학의 부재가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어렵게 하는 가장 근본적 이유이다.

이런 상황에서 건국대학교 같이 장소를 이원화하여 특례입학을 하겠다는 이른바 이원적 특례입학제는 대학의 편의적, 책임 회피적 발상에 불과한 것이고 교육의 궁극적 목적인 사회 통합과는 거리가 먼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생각이다. 건국대학교에서 구상하고 있는 특례입학제는 대학교육을 받고자 원하는 장애인들이 종합생활기록부와 면접전형을 통해 정원의외로 입학한 후, 아직 장애인들이 공부할 수 있는 편의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건국대학교보다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인근의 소아협회 정립회관과 연계, 위탁하여 수업을 받도록 하는 제도라고 한다. 이는 편의시설을 이유로 장애인을 분리 소외교육 하려는 방안이어서 교육의 가장 근본 목표인 통합교육을 외면하는 후진적 방법이다. 건국대는 이런 임시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 나가야만 한다. 이렇게 장애인이 분리 소외된 체제 내에서 비장애 학생들이 장애인 학생들의 수업을 보조 해준다는 계획은 장애인이 언제나 누군가의 보조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 줄 뿐이다. 장애인 학생과 비장애인 학생과의 지원시스템은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시혜가 아니라 그러한 시스템을 통하여 서로간에 배타적인 영역을 없애고 상호 상승적인 사회적 개인적 영역을 만들어 나가는 상호 지원적 시스템이어야 하며 그것은 인간적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그 목적이 있다.

6. 나오며...

무엇보다도 정부와 대학은 장애인 특례 입학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 동안 '정상인' '장애인'이라는 육체적인 지표에 의해서 선 그어진 채 관행화 되었던 부당한 사회적 규제들을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되돌려 놓는데 있다는 점과 함께, 장애인의 대학 입학이 금지되거나 제약되어서는 안되는 까닭이 장애인이 장애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장애인은 교육의 관점에서 장애인인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은 신체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장애를 지닌 사람일 뿐 교육의 주체자인 학생으로서는 결코 무능력자(Disability)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장애 학생들도 언제나 장애를 입을 수 있으므로 정부가 장애인 학생들의 교육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그에 맞는 제도로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 주지 않음은 곧 모든 국민의 교육권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대학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기관이다.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장애인 교육 역시 대학의 회피할 수 없는 의무이며 당연한 것이다. 대학은 이러한 이유로 아무런 조건없이 장애인 학생의 동등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

력을 경주해야 한다.

장애인 특례입학은 통합교육과 그것을 통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 도구일 뿐이다.

이 제도가 그 큰 뜻에 맞지 않다면 과감하게 폐지를 하든가, 수정 보완을 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은 장애인에게 있어 생명이다.

장애와 교육환경

1. 들어가며

20세기의 끄트머리에 있는 지금, 우리 사회는 '국민 1인당 소득(GNP) 1만불과 삶의 질'을 논하고 '인터넷과 사이버스페이스의 新 유토피아'라는 21세기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불과 20~30여년 만에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된 것은 '경제성장 제일주의'라는 논리가 사회 전반에 등장하여 국민 의식을 비롯한 사회 전반을 지배하면서 급격한 산업화를 추진하여 얻어낸 결과이다.

경제 성장으로 인하여 국민들은 과거의 빈곤에서 벗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부의 독점, 빈부 격차의 심화, 빈민층의 확대, 노동자·농민의 문제, 산업 재해, 환경 문제 등의 많은 부작용을 낳은 반쪽자리 경제 성장이었다.

우리 나라 인구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400만 장애인들은 경제성장의 부정적 결과로 양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 제일주의'의 논리에 가려져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에서 철저히 외면 당하고 소외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권의 정당성 확보와 안정화를 위해서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되는 등의 일련의 복지 정책이 있었지만 그것은 장애인을 권리 주체로서 인식하고 장애인의 욕구에 준하는 정책은 아니었고 장애인의 삶의 질과는 무관한 정치적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던 것이 6공화국으로 접어들게 되면서 사회 전반적인 민주화의 조류에 힘입어 장애인 계에서도 장애인의 문제가 개인적이고 우연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는 자각과 움직임으로 몇 가지 투쟁의 성과물을 이루어 내었다.

그러나, 역시 장애인 관련 정책과 사업들은 체제유지적 성격을 띠는 정부의 정책과 입장을 반영한 것에 불과했으며 장애인의 요구와 이해와는 전연 무관하게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21세기를 바라보고 있는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장애인은 거리에서, 혹은 지하철에서 구걸하는 기생적 소비 계층으로 살아가고, 충분히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능력과 자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라는 이유로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장애인 이용 시설이나 교육 시설은 땅값을 이유로, 자녀 교육을 이유로 지역 사회에서 설자리를 잃어버리고 있고, 생계를 이유로 노점상을 하다가 그 마지막 삶의 수단마저도 공권력에 빼앗겨 버리고 분신을 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회적 소외'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따라서, 누구에게나 기본권이자 보편화된 권리인 교육권에 있어서도 장애인의 소외적 현

실은 예외이지 않다.

장애인은 의무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교육에 관한 법제도의 규정 내용이 대부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대부분의 재가 중증 장애인들과 시설 장애인들, 병원 입원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은 당연히 포기하는 것이 당사자나 사회 일반의 생각이다.

오히려 장애인은 그 신체적 조건으로 인해 스스로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키워나가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장애인에 있어 교육은 필수불가결한 의무조항이다.

그런데 이러한 장애인 교육이 국가에 의해 더 후진성을 띄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우선 장애인 교육에 대한 이념의 부재이다.

장애인 교육은 일반교육에서 예외적으로 취급되는 것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으로써 이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교육에 대한 교육 당국의 이해 수준은 시혜나 특혜의 정도에 머물고 있어, 마땅히 고려되어야 할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른 적절한 교육적 정책과 시스템을 사회로부터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며, 아직도 입학상의 불이익이나 학교 생활에서의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또 다른 하나는 교육 환경의 미비에서 오는 교육적 불평등한 차별의 문제이다.

여기서 교육환경이라 함은 물리적으로는 자유로운 이동과 물리적 시설에 접근이 가능한 무장애 공간, 정보통신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원활한 소통과 이용접근, 사회적으로는 동등한 기회에서의 경쟁체제와 통합을 이룰 수 있는 환경과 함께 학생의 기본 인권인 안전권이 확보될 수 있는 환경을 아울러 일컫는다.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에 부합하는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편의 시설과 안전시설, 교육을 받는데 있어서의 여러가지 제약이 최대한 제거된 무장애(Free Barrier)교육환경은 장애인 교육권의 보장에서 기초적 전제 조건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특례 입학 실시하기로 한 건국대학교의 경우,

학교 안의 편의 시설의 부재 등의 이유를 들어 장애 학생을 장애인 기관에 위탁 교육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학교 당국의 움직임은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를 차별함과 동시에 통합 교육으로의 장애인 교육이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오히려 대학이 분리 교육을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례 이외에도 많은 학교에서 특례 입학하는 장애 학생들이 입학은 하고도 교육 편의 시설을 마련하지 않아 많은 장애학생이 휴학을 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우리가 단순히 물리적 편의시설의 개념이 아니라 환경적 개념으로 교육 문제를 접근 하고자 함은 대학교육이라는 것이 선생과 학생간의 일방적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동등한 주체적 입장에서 이루어 지고 학생과 학생과도 이루어 지며 그 공간도 우리 전체 사회가 되기 때문이다.

교육환경부분은 바로 대학의 경쟁력이다.

교육환경이 뛰어날수록 우수한 학생이 입학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교육환경은 장애인 학생을 위한 것도 아나요, 교육받는 모든 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대학종합평가제에 장애인의 동등한 교육권을 완전 보장해 주기 위한 교육환경부문이 강력한 평가요소가 되어야 하는 명백한 이유이다.

2. 교육에 있어서 자유권과 편의시설

장애인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불평등하고 차별적인 요소가 완전히 배척된 통합교육이 그 지향점이다.

여기서 통합교육이라 함은 단순히 외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한 교실안으로 몰아넣는 식의 교육이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교육을 통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을 올바로 이해하고, 비장애인 역시 장애인을 동등한 인격체로 이해하도록 하는 교육의 방법, 철학과 아울러 시스템 자체를 일컫는다.

그리하여 학교 생활 전반에서 함께 활동하는 것에 서로 불편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이며 그러한 관계속에서 비로소 올바른 의미의 경쟁과 상호 협조가 가능하게 되는 교육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자유권 보장이다.

교육권 보장을 위한 자유권이란 교육을 받거나 스스로 해 나가는 데 있어 이동과 이용, 접근과 분리, 참여와 탈퇴가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칭한다. 이러한 자유권을 최소한 보장할 수 있는 길은 교육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접근시설이 조성된 벽없는 교육환경 시설구축이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환경 시설이란 단지 장애인을 생각한 물리적 시설에 관한 특별한 구조적 조치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학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학업 성과를 충분히 이루기 위해 필요한 유형,무형의 교육적 조치와 시스템을 의미한다.

1) 접근공간에 대한 교육환경

장애인 교육환경의 올바름을 풀을 위해서는 우선, 학교 강의실이나 연구실, 또는 도서관 등에 접근을 가능케 하는 매개공간 및 설비(Intermediatd Space And Method)가 필요하다. 예를 든다면 경사로나 휠체어 리프트, 외부 승강기, 점자유도블록, 핸드레일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적 접근시설들이 완비되어 있다하더라도 그 건물의 내부의 시설들이 장애인의 접근과 활동을 방해한다면 그 건물에 대한 접근시설들은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매개공간에 대한 접근시설을 갖춘 건물들이 장애인의 실질적인 이용과 이동과 접근의 자유를 보장하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내부공간(Interior Space)에서의 접근 편의시설을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학교안에서의 이동과 이용과 참여와 탈퇴에 관한 학교 안의 공간과 환경에 대해서만 문제해결이다. 이러한 학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학교 밖의 환경 또한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외부공간(Exterior Space)의 장벽, 즉, 학교 밖의 공간들, 집에서 학교까지 오기까지의 공간들이 장애인의 이동을 철저하게 가로막고 있다. 장애인·비장애인 모두에게 이동권은 헌법에서 보장된 인간의 가장 기본권이며 인권이자 생존권이다.

이동은 사회참여의 기본 조건이며 사회권을 보장하는 첫 번째 요소이다.

이동이 없으면 학교에 갈 수 없고 직장에 갈 수도 없고 대인관계도 할 수 없고 문화생활도 할 수 없다. 이동권에서의 소외는 사회적 생명을 잃는 것에 다름 아니다.

만일, 교통 약자인 장애인이 지금처럼 대중교통수단(버스, 전철)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을 경우에 집밖은 바로 절벽이요, 벼랑이다.

따라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적 물리적 장애가 없는 무장애의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국가는 학내 환경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그러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며 일차적으로 접근 이동 이용 탈퇴의 권리를 보장하는 강제성을 띤 법 제도와 시설이 요구된다.

2)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법과 그 문제점

1995년에 발표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건복지부령 제1호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2조와 3조에는 학교를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장애인 복지 관련법 상에는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장애인 복지법이나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에서도 공공건물에 대한 조항은 있으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고, 세부 기준이 없어 선언에 그치고 있다.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30조 2항에서와 같이 '시설이나 설비의 세부기준은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정의함에 따라, 설치기준이 만들어 졌으므로 장애인 복지법이나 건축법시행령 보다는 설치기준을 중심으로 서술해보고자 한다.

우선 이 설치기준은 건축법시행규칙과 서로 맞지않아 그 적용에 충돌이 일어난다.

설치기준은 도로, 경사로, 장애인용출입구(문), 복도,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화장실, 세면대, 욕실, 샤워실, 탈의실, 객실, 침실, 장애인용 관람석, 객석, 장애인용 주차장,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로, 유도신호장치, 교통시설, 기타 편의시설 등으로 나뉘어 다각적이고 총체적인 부분들에 대하여 세부설치기준을 가지고 있다.

반면 건축법시행규칙은 계단, 승강기, 변소에 대해서만 간략히 기술하였고 세부적인 수치 또한 설치기준에 미달한다. 또한 그 대상건물에 읍,면,동사무소, 경찰관서, 우체국, 전신전화국, 보건(지)소, 공공도서관, 교육연구시설, 학교, 도서관이 빠져있다.

이로 인해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건물이 건축허가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에 빠지게 될 뿐만 아니라 읍면동사무소, 경찰관서, 우체국, 전신전화국, 보건(지)소, 공공도서관, 교육연구시설, 특히 학교, 도서관 등의 교육시설물들은 아무런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일단받고 나서 나중에 다시 이를 설치기준에 따라 보수해야 하는 부조리에 빠지게 된다.

이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전문가가 부족한 건축현장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나 이해가 없고, 건축 시행 및 감리상에 이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건물은 비장애인 중심으로 건축되고 이를 다시 보수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다.

시행 상의 문제점은 설치기준에도 잘 나타난다.

2) 참조1), 참조2)

여기에는 설치기준에 대한 법만 있지 그에 따른 예산의 책정이 되어있지 않음으로 인해 모든 편의시설 설치가 건물주에게도 돌아가게 되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게 되고 결국 이법의 실효성이 의심스럽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이 법의 기준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벌금이 고작 50만 원 이하라는 것은 이 법의 위반을 더욱더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며, 정부당국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의지를 의심스럽게 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설치기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법중에서는 가장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가장 광범위한 부분들에 대해 적용하고 있기에 이 법을 통해 장애인 교육환경을 점검해 보자.

그 규칙

첫째,

그 기준을 살펴보면 경사로, 출입구(문), 복도, 계단, 승강기, 화장실, 세면대, 주차장, 안내표시는 들어 있으나 여기에 도로와 유도도로에 관한 것들은 빠져 있다.

대학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비 및 설치대상시설 중 '교육연구시설'로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며 경사로, 출입구, 복도, 계단, 승강기, 화장실, 주차장, 안내표시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세면대 시설은 권고사항이다.

학교 특히 우리 나라 대학은 하나의 건물이 아닌 여러 개의 건물로 이루어진 대단위 종합대학의 형태로 설립되어, 교정이 매우 넓고 건물 간의 거리도 길다.

더구나 쉬는 시간 10분 사이에 이 공간을 이동하여야 한다. 만약에 장애인 대학생들이 이러한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면 학생들은 등록금을 다 내고 학교에 학생으로서 의무를 다 해도 결국에는 학생들의 수업권마저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된다.

이는 곧 기본권인 교육권을 박탈당하는 것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내도로에 대한 조항이나 유도도로(신호장치) 등을 배제한 것은 편의시설을 단지 건물에만 국한시켜서 사고하기 때문이다.

둘째,

위의 시설, 설비(세면대를 제외한)들이 기존시설까지 의무설치사항이 아니고, 신축 건물에 대한 의무설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들 대부분이 오래되지 않는 건물들이고 설령 오래되었다고 해도 다시 신축공사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볼 때, 신축건물에만 위의 시설들을 의무화 하는 것은 사실상 장애인 교육환경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설치기준을 이렇게 규정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교육부가 기존 건물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있고, 정부의 사회복지예산도 오히려 삭감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설치기준은 겉으로 보기에 많은 시설과 설비들이 학교에 설치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학교측이 새로운 건물을 지을 경우나 기대할 수 있는 눈가림식 정책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장애인을 위한 교육 서비스를 말하기 전에 장애인 복지법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입학에 불리가 작용해서는 안되고 또한 장애인이 불편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3. 외국의 교육환경 (미국의 ADA를 중심으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상황이 다른 미국의 경우와 우리나라의 장애인 교육의 현실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장애인 교육 정책의 모순과 한계점들을 지적해 내고 올바른 국가적 정책을 세우는데 있어서 시행착오를 줄인다는 점에서도 많은 의미부여가 가능할 것 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책에서 다루어지는 모든 과정을 이야기 하기는 여기서는 미국이 지난 1990년 제정한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의 기본이념을 살펴보고 장애인의 교육적 환경은 어떻게 그 법의 취지에 맞게 보장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ADA가 제시하는 바는 요컨대, '인간이 장애에 의해 판단되어서는 안되며 장애인의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하는 일은 사회의 책임이다'라는 것이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사회가 개개인에게 '장애'라는 것을 규정지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환경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의 책임은 장애에 관계없이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살리는데 있다. 학교나 직장의 서로 다른 상황에서 항상 차별에 직면하게 된다면 자립 생활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개개인의 능력의 계발해내어 개인이 최대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사회의 책임인 것이다.

개인의 능력을 계발해내는 것은 물론 교육이다. ADA는 교육을 통하여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여 결국 **남세자로** 만들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ADA의 재활법 504조의 '고등교육에서의 장애인 차별 금지에 관한 시행규칙'에서 장애인의 교육 환경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재활법 504조는 연방 정부가 직영하거나 정부와 계약관계에 있는 모든 기관-사업, 구체적으로는 교육, 의료, 복지, 공공교통 등 공적행적 서비스 사업부문에서의 불합리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장애인 교육을 복지나 시혜의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그나마 그 책임을 대학에 떠넘기고 있다.

장애인의 교육을 '특수교육'이라는 분리교육으로 모든것을 대신하려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의무교육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고등교육에 대한 부분들 또한 단지 대학에 입학하는 것만으로 그 모든 책임을 다하려 하고 있다.

그것에 대한 증거로는 올해 4월에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의 '장애인 특례 입학 실시 대상 대학교 편의 시설 실태 조사 및 장애 학생의 대학생활에 대한 설문조사 보고서'중 학교전체의 장애인 편의 시설 실태조사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교육환경을 짐작할 수 있다.

표 2) 학교 전체 내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단위 : %)

항목	B/A	백분율
학교 전체를 알리는 점자안내지도가 있는 학교 수(A) / 학교 전체를 알리는 안내지도가 있는 학교 수(B)	0/18	0
점형유도블럭이 설치된 학교 수(A) / 조사된 총 학교 수(B)	0/18	0
장애인의 등하교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학교 수(A) / 조사된 총 학교 수(B)	0/18	0
1 장애인과 자원활동자를 연결해주는 정보통신망을 갖춘 학교 수(A) / 조사된 총 학교 수(B)	0/18	0

- 장애인특례입학실시 대상 대학교 편의시설 실태조사 보고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995 -

미국의 버클리 대학의 전체장애인학생수는 618명(90년기준)이나 된다고 한다. 이제 막 장애학생들을 받아들이기로 한 우리와 비교해 볼 때 많은 차이가 난다.

미국의 ADA가 많은 장애 대중의 오랜 투쟁의 결과물임을 볼때 우리나라의 장애인 교육은 넘어야 할 것들이 아직도 많이 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ADA가 장애대중들의 높은 교육수준에 힘입었음을 보며 장애인 교육은 장애인 복지의 단초임을 알 수 있다.

4. 해결 방안과 대안

1) 대학종합평가인정제와 편의시설 조항

교육부가 1994년부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 시행하고 있는 대학종합평가인정제를 대학교육의 수월성을 위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각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학생들의 학구열을 높이는 등 대학문화수준을 상당히 끌어올릴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이 평가의 내용에 따라서 국가의 각 대학에 대한 지원과 대우에 차등을 두고 있어 많은 대학이 이 평가에 상당히 민감하며, 일말의 강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평가제도에는 장애인 학생에 대한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평가요소가 채택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장애인 학생에 대한 교육환경개선은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른바 교육의 세계화와 선진화에도 직결된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환경 부분은 단기적으로 문제해결이 어려우므로 바로 이 평가제도를 통해 시급히 필요한 부분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시행해야 한다.

1995년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이에 대한 건의에 회답한 것을

보면 장애인 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평가를 평가항목 "5.43 학생식당 및 편의시설의 구비상태"에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하면서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 또한 평가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양부문을 통합하여 동일한 평가항목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아울러 평가항목과 관련된 구체적인 추가 지표를 통해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을 강화시킬 계획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와같은 긍정적 태도변화에도 불구하고 간과해서 안될 것은 바로 편의시설을 보는 관점이다. 이들은 편의시설에 대하여 장애인, 비장애인이 분리되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관점이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만을 위한 편의시설이 아닌 모든 사회적 약자와 신체적 이동의 약자. 일시적 장애를 입을 수 있는 모든 학생을 위한 시설이다. 따라서 이 대학종합평가제에 장애인 편의시설과 지원시스템에 대한 평가요소를 의무평가조항으로 채택해야 한다.

2) 장애학생지원 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시스템

교육당국은 대학에 장애학생의 학교 생활을 돕기 위하여 장애학생 교육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

미국의 버클리 대학이 운영하고 있는 장애학생프로그램(DSP)을 보면 입학전의 상담으로부터 학업, 주거, 취업문제 등 장애인 학생이 학교생활을 통해 겪게 되는 모든 문제를 상담하고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평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결정체이다.

따라서 앞으로 만들어질 위원회는 개별적으로 장애학생들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입학상의 원조, 학업상의 원조, 학교 생활에 대한 지원하기 위한 장애학생지원시스템(Disabled Students System)을 만들어 체계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를 배치해야 한다. 또한 위원회는 특히 장애 학생에게 재정급부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들과 대학 당국과의 분쟁을 조정하고, 소송이 제기되면 장애학생들의 권리를 내변하는 활동을 하여야 한다.

교육적 활동에 관한 지원의 핵심적인 내용은 학업 상의 지원인데 그중 하나가 학업 상의 조정적원조(調整的援助)이다. 학업 조건이 장애학생에 대해 장애를 이유로 불평등한 차별이 되지 않도록 이를 조정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보조적원조(補助的援助)는 장애로 입게 되는 학업 상의 불리한 조건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보조 기기나 인적 서비스 등의 각종 보조적 원조가 이루어 져야 한다.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교육적 서비스의 기본 원칙은 정보이용에 관한 접근권 보장이다.

① 지체장애인을 위한 교육 서비스

지체장애인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 서비스는 역시 이동에 대한 확보이다. 각종 건물이나 시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이 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되어 있음을 보며(그것도 제대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장애를 단지 지체장애인으로 국한시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정보 이용접근권 측면에서는 스스로 필기를 하거나 책을 보기가 어려운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인적 지

인 시스템³⁾을 고려해야 한다.

- 1>바퀴차 장애인(뇌성마비, 소아마비, 양하반신절단, 근이양증, 골형성부전증)
- 2>목발장애인(뇌성마비, 소아마비, 편하반신절단 일시적 하지 골절)
- 3>왜소증장애인

이렇듯 지체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유형이 실로 다양하다 그래서 이러한 개별적 장애유형에 대하여 유효적절한 지원과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위원회와 체계가 필요한 것이다.

② 청각장애인을 위한 교육 서비스

강의 학급토론, 실험·실습, 교수와의 대화등 각종 학습현장에서 정식자격을 갖춘 수화통역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대필자(代筆者)를 활용하여야 한다. 강의에서는 수화통역과 대필자의 병용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 학습기제도 지원이 필요하다.(노트북 컴퓨터, 시각자료) 또한 청각장애이용 전화기의 설치도 필요하다.

또한 선생님과 의사의 소통을 통해 수업을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상담이 원활히 이루어 져야 한다.

③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육 서비스

학업상 필요한 낭독인이나 비서직 서비스, 실험·실습 보조자등 인적 지원, 녹음기나 시각장애이용 서적의 대출이용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대학이 개별적으로 해결하기는 힘든 사항이므로 정부차원에서 이러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지원센터를 구축해야 한다.(supporting system center) 그리고 이러한 센터와 각 학교의 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 져야 한다. 이를 통해 각 캠퍼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나 이동훈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캠퍼스와 그 주변에 관한 점자지도이용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학업상의 보조적 원조로서, 점자타자기, 약시인용 확대장치, 시각 장애인용 컴퓨터도 쿼터제로 배치되어야 하며 전자 프린트, 자동낭독기, 음성장치장착 컴퓨터 등의 활용이 필요하다.

녹음교과서의 이용이나 교과서의 녹음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업시의 학습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속도조절이 가능한 녹음기를 대출해 주어야 한다.

위원회에서는 또한 개별적 단위에서의 동등하게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 방법을 전문가와 학생의 상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마련해 주어야 한다.

(시험시간 연장, 시험문제를 점자(약시인을 위해서는 확대서비스)로 제출해야 하며 답안을 제출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점자로 제출하거나 시각장애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방법과 대필자를 이용한 방법, 구술시험)

④ 교육 이외의 학생생활 지원

교육이외의 지원은 첫째는 주택에 대한 지원이다. 장애학생은 교육을 위한 필수 조건들보다 이동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더욱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므로 학교당국은 장애학생이 학교생활의 원활한 통학을 위함과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배려를 해야 하며 장애학생에게도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 시설이 완비되어야 하며 이것은 학생 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중시되어야 한다.

둘째는 경제적 지원이다. 장학금 지급이나 대여, 수업료의 면제, 교과자료비의 보조 학업

3) 장애인학생자원활동통합지원전산망

상의 필요한 보조 기기의 교부등 재정적 지원에 있어 장애학생에 대한 것이 비장애학생에 대한 지원보다 적다거나, 보조를 받을 자격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해서는 안된다.

셋째는, 체육이나 학업의 지원에 대한 평등한 향유이다. 체육 과정이나 운동경기에 있어서도 평등한 기회가 인정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이 주어져야 한다.

3) 고등교육차별 금지법

우리나라는 학력이 사회적 위치를 많이 좌우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취업에 있어서 중요한 조건이 된다. 그럼에도 장애인이 고등교육을 받는다는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제약은 장애인이 저학력으로 말미암아 저임금의 굴레를 벗어나기 힘들게 한다. 뿐만 아니라 교육이 기본권이라는 의미에서도 이러한 차별들은 반드시 일소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고등교육차별 금지법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교육권을 확보해야 한다.

4) 편의시설 관련법을 통합하여야 한다.

현재 장애인복지법과 건축법시행령 등에 명시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규정을 하나로 통합하여야 한다. 현재의 법으로는 편의시설을 강제할 수가 없고 그 기준 또한 서로 상이하여 실무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강제력있고 실효성이 있는 설치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반드시 예산이 책정되어야 한다. 예산이 없는 법안은 선언에만 그치기 때문이다.

5) 취업전문기관을 운영 하여야 한다.

이것은 교육 환경 문제와 더불어 사회환경의 문제이다.

장애인의 실업률은 현재 34%이다. 비장애인의 실업률 2%로 볼 때 장애인에게 있어 취업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1994년 장애인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사업운영위원회에서 조사한 서울지역장애인대학생 실태 및 의식조사보고서를 보면 졸업후 진로에 대해 장애인대학생의 48.9%가 진학을 선택했고, 취업을 선택한 장애인 대학생은 34.8%로 나타났다. 이 통계자료를 보면 전체 대학생과 차이를 보이는데 그 이유는 장애인 대학생이 졸업후 취업할 수 있는 공간이 전문적인 공간을 선호한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아직도 이사회가 장애인이 취업에는 여러 가지 차별을 하고 있어 좀 더 좋은 학벌을 위해 진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진학을 선택한 장애인대학생중 취업이 어려워 진학을 한다고 대답을 한사람이 4.7%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장애인의 전체실업률과 장애인이 종사하는 근무조건들을 볼 때 오히려 장애인 대학생의 취업이 더 어려울 수 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당국은 장애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고민과 다양한 취업 자료를 준비하여 그들의 취업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만약 대학당국은 취업 기관의 설치가 어려울 때는 장애인취업알선센터와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그 기능을 다 하여야 한다.

6. 나오며....

1996년 2월에 대통령 자문기관인 교육개혁위원회가 펴낸 제 3차 대통령 보고서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2)에서는 신교육 체제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진 열린 교육 사회 평생학습 사회의 건설을 비전으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비전의 실현을 위하여 교육운영을 교육 공급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 교육으로, 획일적인 교육에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으로, 규제와 통제 중심 교육 운영에서 자율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교육운영으로, 획일적 균일주의 교육에서 자유와 평등이 조화된 교육으로 그리고 질 낮은 교육에서 평가를 통한 질 높은 교육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는 장애인 교육에서는 마치 딴 나라 이야기로 들릴 뿐이다.

장애아동은 자기동네에 마땅한 교육기관이 없거나 일반학교에서 입학할 거부해 3~4시간이 걸려 통학하거나 아예 취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가장 교육이 필요한 장애인 교육에서 이렇게 후진성을 면하고 있지 못하는데 아무리 개혁안을 발표한다고 해서 그 나라 교육이 진정코 세계화되고 선진화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성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든 부족한 사람이든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키우는데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데 있다면 교육당국은 지금부터라도 장애인 교육에 있어 분명하고 동등한 교육철학과 인식을 가지고 실천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1)

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계단의 규칙) ③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운수시설,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 계단에 설치하는 난간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또는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측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5조(승용 승강기등의 구조) ⑤영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지체장애이용 승강기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승강기의 안팎에 장치되는 모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1.2미터 이내의 위치에 설치할 것
2. 승강기의 출입구의 너비는 8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승강기 밖의 바닥과 승강기의 바닥의 틈은 3cm 이하로 할 것
4. 승강기의 출입구와 평행한 면의 너비는 1.5미터이상, 이와 직각방향의 면의 너비는 1.4미터이상으로 할 것

제27조 (변소의 구조등) ④영 제55조 제4항의 규정에 위한 지체장애이용 변소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변소 및 대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칸의 출입문은 유효폭의 0.9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대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칸의 각 변의 길이는 유효폭의 2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대변기의 양측에 수직 및 수평의 손잡이를 설치할 것

참고자료 2)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편의시설의 세부 설치기준과 대상시설)

1. 도로

- 1) 보도는 휠체어사용자와 시각장애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의 너비, 바닥의 재질,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2) 주변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하도로에는 양측면에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3) 도로에 설치한 횡단보도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연석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4)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는 점형 유도블록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용 바닥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경사로

-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원, 통신시설,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단차가 있는 경우에는 단차를 2센티미터 이하로 하거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2) 건축물내에 별도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가 설

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단만 설치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다.

3) 옥외 경사로는 통행에 지장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물이 보도 표면에 고이지 아니하고 하여야 한다.

4) 장애인 전용시설은 옥외의 경사로 위에 지붕 또는 차양을 설치할 수 있다.

3. 장애인용 출입구(문)

1)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 공원, 통신시설, 공동주택의 출입구(문)은 장애인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축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르는 출입구(문)는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도로나 보도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3) 장애인용 출입문은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식의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건축물의 장애인용 출입구(문)전면 0.3미터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유도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복도

1) 근린공공시설중 읍·면·동사무소·경찰관서·우체국·전신전화국·보건(지)소·공공도서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중 학교·도서관,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숙박시설,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 교통시설 및 장애인전용주택에는 장애인의 이용을 고려한 복도폭 및 바닥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장애인 전용시설의 복도 측면에는 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계단

근린공공시설중 읍·면·동사무소·경찰관서·우체국·전신전화국·보건(지)소 공공도서관,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중 학교·도서관,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숙박시설,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 교통시설, 공동주택에서 별도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단만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단을 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계단의 측면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장애인용 승강기·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휠체어리프트

1) 교통시설 및 6층이상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6층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인 근린공공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관람장, 방송국, 전시시설, 장애인전용주택에서 장애인용 승강기·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고정형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철도역사에 구조적으로 설치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장애인용 승강기·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7. 장애인용 화장실

1) 5개이상의 대변기가 설치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시설, 학교, 도서관,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숙박시설,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중 공연장 및 관람장, 방송시설중 방송국, 교통시설, 공원, 장애인 전용주택 및 공중화장실에는 1개이상의 장애인용 대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장애인용 화장실로 들어가기위한 통로·출입구는 단차등 기타의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출입구에서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장애인용 화장실 및 대변기가 설치되어있는 칸의 출입문의 유효폭은 0.9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장애인용 대변기의 칸막이 규격은 휠체어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그 유효면적이 1.0미터X1.8미터이상이어야 한다.

5) 장애인용 대변기 및 소변기 양 옆에는 장애인이 의지할 수 있는 수직 및 수평의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바닥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럽지 아니하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7) 장애인용 화장실의 출입문은 미닫이 문이나 접이문으로 사용할 수 있다.

8. 세면대

1)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시설, 학교, 도서관,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나 3천제곱미터이상인 판매시설, 장애인전용주택등에는 장애인의 이용을 고려한 세면대를 1개이상 설치할 수 있다.

2) 기숙사, 공동숙소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세면장과 장애인용 화장실내에는 휠체어사용자와 보행곤란자의 이용을 고려한 세면대를 설치할 수 있다.

3) 휠체어사용자가 세면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세면대 전면에 휠체어의 유효바닥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

4) 휠체어사용자용 세면기는 세면기 밑으로 무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벽에 부착할 수 있다.

13. 장애인용 주차장

1)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종합병원, 교육연구시설, 전시시설 및 별표 2의 제6호에서 규정한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대상건축물에는 당해 시설의 부설주차장 대수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대수의 주차장을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 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하되 소수점이하 단수는 이를 1대로 본다.

2) 장애인전용주차장은 통행에 편리한 출입구의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4.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로, 유도신호장치

1) 대피소를 제외한 근린공공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시설, 장애인특수학교,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숙박시설, 전시시설, 교통시설, 공원, 장애인 전용주택의 건물 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물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로, 유도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애인을 위한 유도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은 통행동선의 결절점, 보도상황의 변화지점, 시설의 출입구 등에 부설하여야 하며, 기타 보행자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3) 대피소를 제외한 근린공공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종합병원,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및 금융업소, 공원, 전시시설, 교통시설, 장애인 전용주택에는 시각장애인이 해당 시설물의 위치 등을 감지할 수 있도록 유도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 4)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시·청각장애인용 경보 및 피난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장애인 대학생의 정당한 교육권 확보를 위한 공동요구안

1. 교육부는 고등교육에 있어 장애인차별 금지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차별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입학에서 장애로 인하여 학과선택에 일률적으로 제한을 받거나, 학교생활에 있어 편의시설부족으로 인한 차별, 수업에 있어서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기계적이고 일률적인 평가, 취업에 있어서의 어려움, 장애인 이용 가능한 기숙사 시설의 미비 등 다양하게 장애인 대학생에 대한 차별과 교육권리의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초·중·고 과정에서는 부족하지만 일정정도 특수교육진흥법이라는 형태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고등교육에 있어 장애인의 교육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다. 교육은 국민의 기본권이며, 교육부는 장애인에게도 이러한 기본권을 보장해줄 책임을 마땅히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까지 초·중·고 과정에만 국한되어 있는 장애인 특수교육진흥법의 내용을 고등교육과정에 까지 확장시켜 '고등교육에 있어 장애인 차별 금지에 관한 시행령(가칭)'을 마련하여 고등교육에서 나타나는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는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교육부의 책임인 것이다.

2. 교육부는 대학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수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라.

교육부는 장애인의 교육과정상의 특성이나 평가도구 또는 평가방법상의 문제로 인하여 대학진학 기회가 제한되었던 장애인들의 고등교육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초·중·고 과정에 국한되어왔던 장애인 교육기회를 고등교육과정에 까지 확장시켜 교육받을 권리를 확대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 대학특례입학 실행하였다. 교육부는 당초에 자격과 능력이 있는 장애인들이 대학교육을 받는데 불편이 없도록 관련시설 확충 등 여건조성을 위한 지원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금은 지원방침을 전면백지화하였다.

이로 인하여 각 대학은 편의시설 설치 및 수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특례입학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중증장애인의 고등교육기회확대라는 목적에 벗어나 입학대상장애인 중에서 중증장애인을 제한하고 경증장애인을 위주로 선발하는 편법을 사용하고,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복지시설에 장애인만 따로 교육시키겠다는 분리교육을 말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이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 마련을 위한 예산지원이 없이 장애인의 교육을 이야기 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차별하는 것이다. 이에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부는 각성하고, 당초 약속했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수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르는 예산을 즉각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3. 교육부는 국·공립대학에 장애인 특례입학을 의무화하라.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있어서 교육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장애인들의 교육기회는 비장애인들에 비해 많은 제약을 받아 왔다. 이러한 의미에서 장애인 특례입학은 장애인의 교육기회를 확대한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정책이다. 정부가 장애인 교육에 의지가 있다면 국·공립대학부터 먼저 장애인 특례입학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정책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앞장서야 할 국·공립대학이 특례입학제도의 시행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의지가 상실된 전시용 생색 내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교육부는 하루빨리 전시교육행정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장애인 교육에 책임있는 자세로 임하여 국공립대학의 장애인특례입학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4. 교육부는 대학종합평가에 장애인 편의시설 및 수업지원프로그램에 관한 평가항목을 첨가하라.

1만불 시대에 사회복지 최빈국 수준의 부끄러운 모습은 대학교육의 수준에서도 여실히 나타나는 모습이다.

교육부는 교육개방화를 앞둔 시점에서 대학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대학종합평가제를 도입하였다. 대학종합평가에 항목들은 교육여건의 전반적인 부분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장애인 대학생의 교육 여건에 관련된 조항은 하나도 없다.

세계화를 지향하면서 대학의 경쟁력 향상을 이야기 하지만 장애인들이 편의시설부족과같은 문제로 인하여 수업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망신스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진정한 세계화는 장애인도 차별받지 않고 함께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되어진 것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들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학종합평가 항목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업지원프로그램의 항목을 첨가하여야 한다.

5. 대학은 장애인학생교육방안에 대한 장·단기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라.

장애인 특례입학이 시행된지 3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장애인 대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있어 나타나는 다양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교육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에는 교육부의 역할과 더불어 개별 대학의 책임도 중요하다.

장애인 대학생의 학교수업 및 생활에 있어 어려움은 편의시설, 수업기자재 등의 부족 이외에도 평가 방법, 교수와의 의사소통, 교우관계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장애인 대학생을 위한 상담, 강의실의 조정, 자원봉사자 활용, 시급하고 가능한 편의시설 마련 등 단기적인 계획과 장기적으로 장애인 대학생이 교육에 있어 차별받지 않을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장애인 대학생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 서강대학교 총학생회, 숭실대학교 총학생회,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회, 전국지체장애인대학생연합회, 서울·경인지역 사회복지(사업)학과 대학생연합회 / 감리교신학대 동료, 건국대 죽순회, 고려대 하나들다섯, 그루터기, 뇌성마비연구회 바름,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명지대 키비탄, 부산 장애인야간학교 참배움터, 부산대 특수교육학과, 상록수 독서회, 서강대 손짓사랑, 서강대 참우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숭실대 사회사업학과, 연세대 게르니카, 연세대 국문학과,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복지와 사회연구회, 연세대 사회학과, 연세대 적십자,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이화여대 손지, 이화여대 호우회, 이화여대 특수교육학과, 한양대 키비탄, 한우회, 충북대 질그릇 자활회